

CEO Report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2018. 7

안철경·정인영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CONTENTS

I. 북한의 보험제도 1

- 1. 보험의 정의 및 특징 1
- 2. 보험제도 발전 과정 2

II. 북한의 보험산업 현황 5

- 1. 운영체계 5
- 2. 보험상품 유형 및 특징 9
- 3. 시장 규모 및 상품판매 현황 14

III. 보험산업의 과제 18

- 1. 진출 방안 18
- 2. 과제 21

〈부록 I〉 북한의 사회·경제 현황 24

I

북한의 보험제도

1. 보험의 정의 및 특징

- ❑ 북한에서는 보험을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사람과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손해보상제도”로 정의하고 있음¹⁾
- ❑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가 보험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보험제도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나,²⁾ 북한의 경우 인민의 생활 안정, 경제발전에서의 이용 등의 목적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함³⁾
 -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노동능력의 상실, 사망,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⁴⁾이나 보험보상금⁵⁾ 제공을 통해 공민(公民)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함
 - 협동단체재산(공동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기금을 이용하여 경영활동의 정상화를 보장하거나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함
 - 협동단체나 공민들의 유희자금(遊休資金) 동원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1) 북한보험법 제2조 1항

2) 고평석(1992), 『북한 보험제도의 체계와 그 개요』, 『보험금융연구』 제5호; 삼성금융연구소(2000), 『북한 금융시장의 현황과 생보사 진출방안』

3) 북한보험법 제1조(보험법의 사명)

4) 보험금이란 인체보험에서 보험기간이 만기되었거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하는 자금을 의미함(북한보험법 제2조 9항)

5) 보험보상금이란 재산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지불하는 자금을 의미함(북한보험법 제2조 9항)

❑ 따라서 북한에서의 보험은 사유재산의 보호가 아닌 국가소유시설물 등이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재원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국영공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이 강함

- 해외보험은 부족한 담보력의 확보보다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복구 재원의 일부를 재보험을 통해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험회사가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도 함

❑ 북한의 보험제도는 국가 독점운영체제의 특징을 보임

- 보험업의 경우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적으로 독점적 관리·운영을 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
 -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해외조선 동포, 기업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사업을 허용함⁶⁾

2. 보험제도 발전 과정

❑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최초 보험은 1946년 4월 설립된 고려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화재보험, 생명보험, 가축보험 등을 판매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고려화재보험주식회사는 1947년 7월 북조선중앙은행과 민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국민공영고려보험주식회사로 변경된 후,⁷⁾ 1951년 2월 조선보험 주식회사로 개편됨⁸⁾

6) 북한보험법 제5조(보험업무의 담당자)

7) 이에 1947년 7월 10일을 북한 최초 국영보험의 시작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창립일로 기념함

8)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 북한의 보험관계법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행 사회주의헌법 제2장의 경제에 관한 규정이고, 이에 근거하여 보험에 관한 여러 법령 등이 제정되어 왔음⁹⁾

- 국가보험(國家保險)제도를 확립시킨 법적 근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보험제도를 실시할 데 대하여(1954. 1. 15. 내각결정 제6호)」임
 - 국가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시행으로 조선보험주식회사가 폐지되고 보험 업무를 국가가 독점·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됨¹⁰⁾
 - 즉, 1954년 1월 조선보험주식회사가 재정성 보험관리국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해산됨으로써 북한에 사적소유에 기초한 보험이 사라지고 단일보험제도가 도입됨
- 1978년 인체보험에 관한 규정(1978. 3. 11. 정무원 결정 제12호)과 재산보험 규정(1978. 3. 11. 정무원 결정 제13호) 및 재산보험규정세칙(1978. 3. 22. 중앙은행지시 제11호) 제정으로 제도가 체계화됨
 - 1981년에는 인체보험규정세칙(1981. 1. 5. 중앙은행지시 제3호) 제정으로 인체보험제도 또한 보다 체계화된 모습을 갖추
- 또한, 국가보험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민법¹¹⁾ 제3편 채권채무제도에 관한 규정 중 일반계약에 관한 규정(제205조 또는 제212조)이 적용됨
 - 한편, 자원보험(自願保險)의 경우 민법 제3편 제3장의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 즉, 일반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그러나 보험계약 관계만을 정하고 있는 민법을 통해 보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어 보험사업 및 보험계약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험법(1995. 4.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8호)」을 제정함

9) 법무법인 태평양(2005), 『개성공업지구 보험준칙안』, 통일부 용역보고서

10) 보험감독원(1997), 『북한보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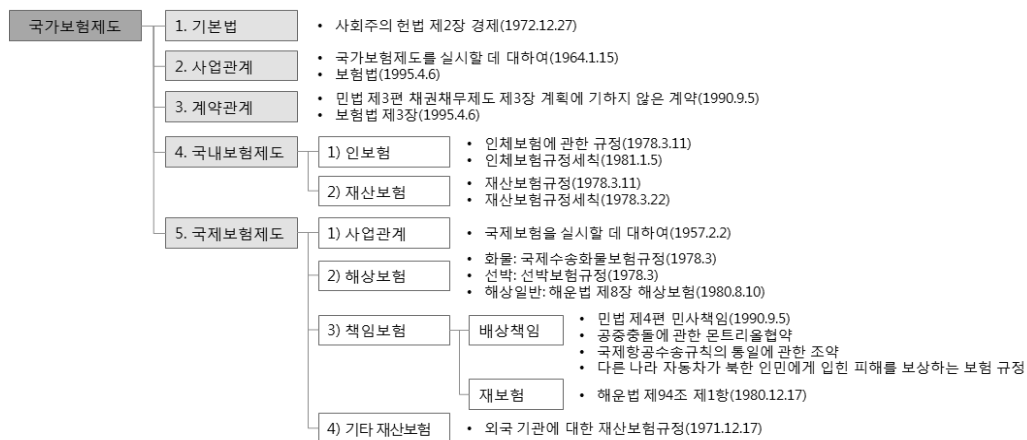
1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1990. 9. 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1999. 3. 24.)

- 북한보험법은 법 제정 이후 총 4차례(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에 걸쳐 개정되었으며,¹²⁾ 제6장 77개 조문으로 구성됨
 - 북한보험법은 제1장 보험법의 기본,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인체보험, 제4장 재산보험, 제5장 보험회사,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통제 및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됨

☐ 한편, 국제보험제도는 1957년 2월 「국제보험을 실시할 데 대하여가 시행된 이후, 1960년대 대외무역거래 확산으로 「국제보험사업을 더욱 개선할 데 대하여(1960. 12. 15. 내각결정 제72호)」를 채택함¹³⁾

- 상기 법안에 의거하여 선박보험규정(1961, 재정성 성령 제2호), 화물운송 보험규정(1966, 산업은행규칙)이 제정되었으며, 국제보험 사업범위가 확대 되면서 관련법을 수정·보충하기에 이룸

■ 그림 I-1 북한의 보험제도 발전과정(북한 보험관계법의 구조)



자료: 고평석(2009), 『북한 보험법』, p. 45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1999. 2.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38호(2002. 5. 16.)

13) 보험감독원(1997), 『북한보험제도』

II

북한의 보험산업 현황

1. 운영체계

☒ 보험사업의 운영주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보험 형태임

- 최초 보험법(1995)에서는 보험사업의 당사자를 국가보험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2008)을 통해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로 변경하였음
- 다만, 나진, 선봉 등과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자와 해외조선 동포는 보험회사를,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대표부, 지사, 대리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¹⁴⁾

1) 조선민족보험총회사

☒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 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는 현재 북한에서 독점적으로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보험기관임¹⁵⁾

- 조선민족보험총회사의 전신은 1947년 7월 설립된 국민공영고려보험주식회사임
 - 동사는 1951년 2월 조선보험주식회사로 개칭되었다가 1954년 1월 재정성 보험관리국에 업무를 이관하며 해산하였으며,

14) 북한보험법 제5조(보험업무의 담당자)

15) 북한 내 정부기관으로서 공식명은 대외보험총국이며, 소재지는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임

- 1957년 국제보험 업무 도입으로 해상보험업무를 담당할 조선국제보험회사(KFIC: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를 재정성 산하에 설립함에 따라 부활하게 됨
- 2005년에는 회사 명칭을 대외적으로 조선민족보험총회사로 변경함

1947년에 설립된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 내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공민들을 대상으로 생명 및 비생명보험 담보를 제공함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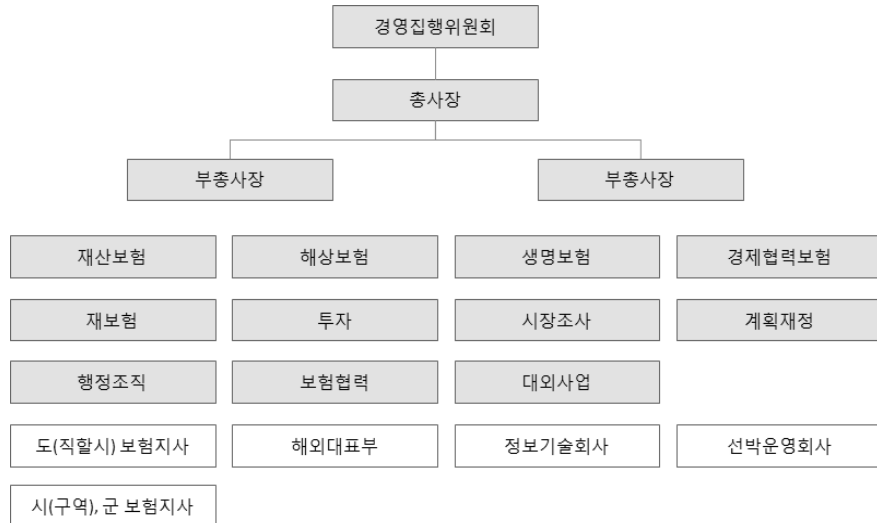
- 본사는 평양에 위치하며, 10여 개의 도급 보험지사들과 그 아래 200여 개의 시(구역), 군보험 지사들을 보유하고 있음
- 조선민족보험총회사의 주요 업무부서로는 재산보험국, 해상보험국, 생명보험국, 경제협력보험국, 재보험국, 투자국 등이 있음¹⁷⁾

16) 조선민족보험총회사 홈페이지(<http://www.knic.com.kp>)를 참고로 작성함

17) 각 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 재산보험국: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개인들로부터 재기되는 재산, 농작물, 집짐승, 기술,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비생명보험업무 수행, ② 생명보험국: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및 개별적 공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생명보험과 불상사보험 담보를 제공, ③ 경제협력보험국: 라선경제무역지대, 경제개발구, 외국투자기업(외국인, 외국인단독기업, 합영, 합작회사, 대표부, 대리지사, 대리사무소, 대사관, 국제기구 등)에 대한 각종 보험담보를 제공, ④ 재보험국: 총회사의 직접보험업무에 대한 재보험담보 조직, 보험 및 재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재보험업무의 접수, ⑤ 투자국: 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과 광산을 비롯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업무 진행, 총회사 내 선박운영회사와 같은 비보험기업들을 관리·운영
그 밖에도 시장조사국, 보험협력국, 계획재정국, 행정조직국, 대외사업국 등의 부서를 보유함

■그림 II-1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조직체계



자료: 조선민족보험총회사 홈페이지(www.knic.com.kp)

☒ 과거 북한에서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조선중앙은행 보험취급단위가 보험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5년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생명보험사업을 인계받음

- 2005년 전에는 조선국제보험회사가 대외보험(국제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조선중앙은행은 대내(국내)보험업무를 담당함

☒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런던, 취리히, 함부르크, 파리, 빈, 불가리아, 싱가포르, 멕시코, 파키스탄 등지 해외지점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보임

- 특히, 2016년 8월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채택¹⁸⁾으로 유럽연합 각료 이사회가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본사와 유럽 지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함¹⁹⁾

18)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외화 조달 활동을 한 단체로 조선민족보험총회사(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 등을 지목함

19) 함부르크지사는 2015년 7월부터, 런던지사의 경우 2016년 4월부터 EU 제재(자산동결, 금융거래 금지, 직원에 대한 비자연장 거부 등)를 받음에 따라 사무소가 폐쇄된 상황임

2) 외국보험회사

- ❑ 북한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투자자와 해외조선동포는 특수경제지대에서는 보험사업을 할 수 있으며, 외국보험회사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 등도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 ❑ 외국보험회사가 특수경제지대에서 진출한 정보는 없으나, 보험회사와 파트너가 되어 합작은행을 설립한 사례는 존재함
 - 1995년 1월 네덜란드의 ING와 조선국제보험회사가 ING North East Asia Bank라는 합작회사를 7대 3의 비율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평양지점을 개설하였음²⁰⁾
 - 그러나 수익성 악화로 1999년 5월 사업에서 철수함²¹⁾
- ❑ 한편,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또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해외동포가 보험에 드는 경우 북한영내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함(북한보험법 제6조)
 - 예외적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 사업 당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관련한 보험을 남한의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사례가 있음²²⁾

20) 한국경제(1995. 1. 22), “네덜란드은행 북한 진출... 국영손보사와 합작”

21) 중앙일보(1999. 4. 19), “네덜란드 ING베어링은행, 평양지점 6주내 폐쇄”

22) 경수로와 관련하여 노동자재해, 건설조립, 기계파손, 화재 및 해상운송, 신변안전, 자동차배상책임, 동산종합 위험에 대한 보험 수요가 발생하자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KFIC)는 자신들이 인수하려는 의향을 표명하였으나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부분 남한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신동호 외 2001)

2. 보험상품 유형 및 특징

☒ 가입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되어 남한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상품은 제한적임

- 인체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의 육체적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담보로 하여 조직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등이 이에 해당함
- 재산보험은 자연재해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여 기관, 기업소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재산보험의 주요 상품에는 화재보험, 기계파손보험, 농업보험, 자동차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건설 및 설비조립보험, 신용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 한편, 보험거래의 의무성 여하에 따라 의무보험과 자원(自願)보험으로 구분함

- 의무보험에는 여객보험, 자동차 제3자배상책임보험, 건설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 거래방식에 따라서는 직접보험(원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하며, 지역을 기준으로 대내보험(국내보험)과 대외보험(국제보험)으로 구분함

- 대내보험은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의 재산과 주민을 대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며 예방적 기능과 보상적 기능을 수행함²³⁾
 - 북한에서 보험의 예방적 기능은 보험대상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3) 안예홍(2005), 『북한의 금융현황과 최근의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p. 5~8

하거나 확대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보상적 기능은 발생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기능을 의미함

- 대외보험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소유재산을 대상으로 함²⁴⁾

■ 표 II-1 북한 보험상품의 종류

분류 기준	상품형태 및 주요 상품
가입대상	• 인체보험(생명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 재산보험(화재보험, 기계파손보험, 농업보험, 자동차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성	• 의무보험(여객보험, 자동차 제3자배상책임보험, 건설배상책임보험) • 자원보험(생명보험, 사망보험, 재해보험, 만기보험, 어린이보험, 혼합생명보험 등)
거래방식	• 직접보험(원보험) • 재보험
지역적 성격	• 대내보험(국내보험) • 대외보험(국제보험)

1) 인체보험

- ☐ 인체보험은 과거 조선중앙은행 저금보험처에서 관장하였으나, 2005년 조선민족총보험회사(생명보험국)가 중앙은행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인계받아 수행하고 있음²⁵⁾
- ☐ 북한의 인체보험은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되며,²⁶⁾ 근로자들의 노동능력이나 생명, 재산상의 손실을 보장함
 - 인체보험의 대상은 보험계약이 만기되는 해의 나이가 16세 이상 65세 이하인 근로자이며,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함

24) 백과사전출판사(2010), 『광명백과사전 6』, 백과사전출판사(평양), pp. 701~702

25) Kang Sun Il(2010), "GENERAL REVIEW OF MARINE CARGO INSURANCE IN DPR KOREA", 《현시장형편에 대처한 해상보험 및 재보험》에 관한 국제토론회(조선민족보험총회사)

26) 북한의 인체보험은 개인이 드는 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공제하는 일종의 국가보험이며, 국가가 제정한 재정원칙에 따라 할당되는 급여에서 인체보험을 공제함(이준혁(2017. 6), 『북한에도 보험이 있다?』, 『웹진 e-행복한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그러나 인민군대, 인민경비대, 사회안전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함²⁷⁾
 - 인체보험 계약기간은 3년, 5년, 10년이며, 보험금액은 100원을 단위로 100원부터 1,000원까지 설정되어 있음²⁸⁾
 - 한편, 어린이보험의 계약기간은 5년부터 13년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금액은 500원 이상임
 - 인체보험 가입 후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노동능력상실보험금으로 구분됨²⁹⁾
 - 공민이 사망하거나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노동능력상실 보험금을 지급하며,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거나 감경함³⁰⁾
- ☐ 인체보험은 자원적 인체보험³¹⁾과 의무적 인체보험으로 구분되며, 현재 운영 중인 자원적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만기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이 있으며, 의무적 인체보험에는 여객보험이 유일함
- ☐ 북한의 재정금융사전(1995)에 의하면 보험상품의 운영 체계는 남한과 유사함
-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여객보험의 보험료는 차량 및 선박요금의 일정비율(5%)로 부과하며, 여행기간 중 사고 발생 시 노동능력상실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지급됨

27) 고평석(1992), 『북한보험제도의 체계와 그 개요』, 『보험금융연구』, 제5호

28) 신동호(2000), 『북한의 보험 산업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통일경제』

29) 전우현(2012), 『북한의 보험법 - 인보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0) 보험가입자가 노동능력 1류 상실자로 된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2류나 3류 상실자로 되면 상실사고 다음분기부터 보험료를 50% 감경함(전우현(2012), 『북한의 보험법 - 인보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1) 자원적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사망보험, 재해보험, 만기보험, 어린이보험, 혼합생명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 일반상해보험, 정기부양보험, 소득보상보험이 있으나 실제로 모든 상품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음

- 인체보험 중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장기저축성 성격을 갖고 있음
 - 생명보험금은 저축성 성격의 만기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됨
 -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만기보험금과 이자를 지급받으며, 계약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피보험자들은 사망보험금을 받음

2) 재산보험(손해보험)

- ☐ 북한의 재산보험은 국가재산, 또는 개인재산에 대해 자연재해 또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함
 -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선박보험, 화물수송보험, 비행기보험, 기계파손보험, 건설공사 및 설비조립보험, 철도보험, 자동차보험, 원자력보험, 유리보험, 산림보험, 농작물보험, 집짐승보험이 있음
- ☐ 북한에서 재산보험은 이윤창출보다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이 자연재해와 뜻밖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데 있음
 - 재산보험은 순수 보장성보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불되나, 만기에 보험금을 미상환함
- ☐ 재산보험은 가입형태에 따라 자원적 재산보험과 의무적 재산보험으로 구분됨
 - 자원적 재산보험에는 개인재산보험, 외국인재산보험, 합영재산보험 등이 있으며, 의무적 재산보험에는 국가기관³²⁾·기업·협동농장 재산보험, 자동차 제3자배상책임보험, 수입화물보험 등이 있음

32) 국가재산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명분상으로는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부터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만 다른 이유로는 해외시장에 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사고 시 해외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대사관, 대표부, 합영·합작회사들의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외국인자동차공민피해보험), 농작물보험, 집짐승보험, 과일보험도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음

3) 국제보험

- ❑ 북한은 국제보험을 대외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장치로서 대외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외화벌이 등 국가적 이익을 위해 국가적인 사업으로 규정함³³⁾
- ❑ 북한의 국제보험은 직접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됨
 - 직접보험에는 국제수송화물보험, 배(선박)보험, 항공보험, 외국인재산보험, 자동차공민피해보험, 외국인관광객보험이 있음
 - 이 중에서 수입화물보험, 외국인자동차공민피해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운영됨
- ❑ 재보험은 조선민족보험총회사의 재보험국이 담당하며 북한 국내보험 위험을 원천으로 해외 재보험에 가입하여 국내에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금을 청구함
 - 재보험의 또 다른 목적은 북한 원화로 결재되는 국내보험 위험을 담보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며, 이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의 실제 존재 이유로 알려짐³⁴⁾
 - 외화로 보험거래가 이루어지며 보통 북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국제 기준보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를 위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의 운영자금은 연평균 4~5천만 달러에 이름³⁵⁾

33) 백과사전출판사(2010), 『광명백과사전 5』, p. 696

34)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2017), 『북한의 금융』, p. 108

35)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2017), 『북한의 금융』, p.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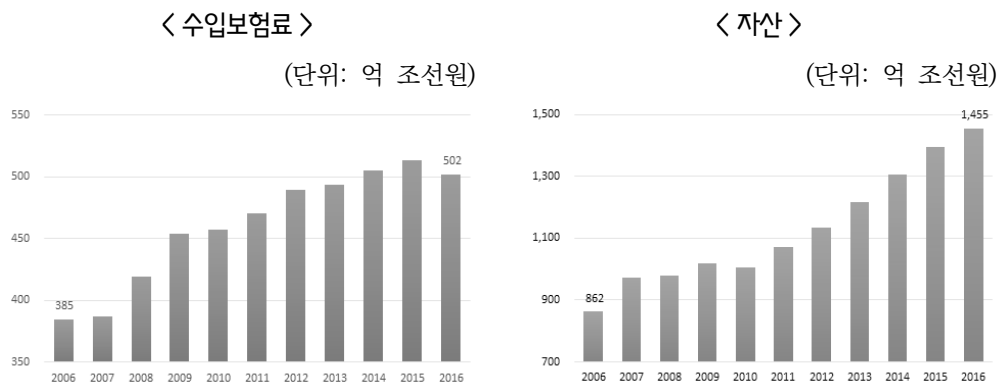
3. 시장 규모 및 상품판매 현황³⁶⁾

1) 보험시장 규모

❑ 북한의 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6년 기준 502억 조선원으로,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9% 증가하였음

- 환율을 약 100조선원/달러로 계산하면 약 5억 달러 규모임³⁷⁾
- 북한 보험시장의 자산 규모는 2016년 기준 1,455억 조선원(약 15억 달러)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II-2 북한의 보험시장 규모



자료: 조선민족보험총회사 홈페이지

36) 북한 보험시장 전체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관계로, 북한 국영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의 실적을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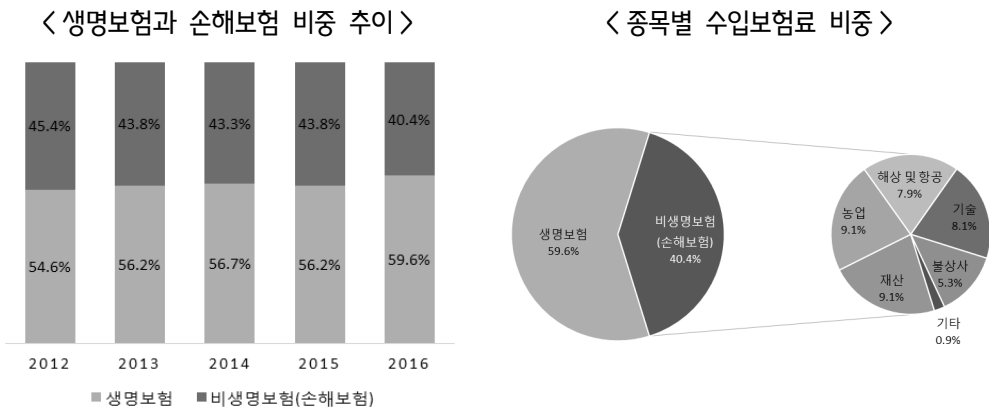
37)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 조선원/달러 환율은 108.4원임

2) 상품별 판매 비중

☐ 북한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6년 기준 각각 59.6%와 40.4%로, 생명보험 시장 규모가 더 큼

- 비생명보험(손해보험)의 종목별 판매 비중은 농업보험(9.1%), 재산보험(9.1%), 기술보험(8.1%), 해상 및 항공보험(7.9%), 불상사보험(5.3%)³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상품구조는 시장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계획경제 특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음³⁹⁾

■그림 II-3 북한의 보험상품 판매 현황



자료: 조선민족보험총회사 홈페이지

38) 불상사보험은 상해(personal accident) 보험을 의미함

39)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화재보험, 해상보험의 비중은 축소되고 자동차보험, 기술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신동호 외 2001)

3) 수익

❑ 북한 보험산업의 경우 2006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이익을 실현 중임

- 생명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규모가 비생명보험사업보다 큼
 - 2016년 기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대비 이익비율은 각각 28.2%와 6.6%임
- 보험회사의 자산별 투자 비중은 유가증권(44.5%), 대부(Loan, 43.3%), 부동산(6.5%), 기업투자(5.7%) 등의 순이며, 매년 자산운용을 통해 투자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보험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32.5%는 국가납부금으로 지출되고 있음

❑ 비생명보험(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시장환경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100%를 하회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비생명보험의 종목별 합산비율은 기술보험(134.3%), 재산보험(115.3%), 불상사보험(95.5%), 해상 및 항공보험(87.7%), 농업보험(3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 북한 보험시장 주요 지표

(단위: 백만 조선원)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수입보험료	38,463	41,939	45,696	48,905	50,495	50,186
투자수입	5,112	1,597	1,881	2,996	4,260	4,669
국가납부금	-	3,872	4,424	2,669	5,539	3,948
당기순이익	-3,906	8,041	9,188	5,544	11,504	8,200
비생명종합률	165.4%	55.9%	73.0%	115.2%	76.5%	93.2%

주: 비생명종합률은 손해보험상품의 합산비율(combined ratio)에 해당함
 자료: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연차보고서 각 연호; 홈페이지(www.knic.com.kp)

III

보험산업의 과제

1. 진출 방안

- ❑ 북한의 보험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인구구조, 금융 및 경제발전 수준, 사회체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개혁·개방 시 성장잠재력이 높음

 - 북한의 인구는 2,500만 명으로 남한의 절반 수준이며,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남한에 비해 급격하지 않음
 - 북한의 경제는 일정 기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겠지만 점차 시장 경제적 요소가 확대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사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낙후된 산업구조의 개선, 교역국의 다양화 등을 통해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전환해 갈 것임
 -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하에서는 개인의 재해, 질병, 노령 등에 대한 위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향후 개인 또는 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 갈 가능성이 높음
- ❑ 이에 보험업계는 남북경협에 따른 시장(북한진출기업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보험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체제전환국의 경우 초기에는 낙후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손해보험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형성됨

- 그러나 점차 개인 및 가계의 구매력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산업육성을 위한 저축 유도 정책에 의해 생명보험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신흥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장임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는 북한 진출 국내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지원, 2차적으로는 국내 보험회사의 새로운 시장개척 방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북한보험시장 개방 전까지는 경험기업의 리스크를 국내보험회사가 직접 인수하거나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북한 내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모두 북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보험법 및 외국인투자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 보험회사가 북한 내 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① 민족 간 내부거래방식 허용: 남북경협물건에 한하여 보험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Supply) 방식과 같이 국내 보험회사가 북한 내 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고 북한에 거주하는 소비자(담보물건)에게 직접 보험서비스를 제공함⁴⁰⁾
 - ② 북한보험회사와의 업무제휴: 북한보험회사가 원보험을 인수하고 상당부분을 임의재보험 형식으로 국내보험회사가 인수함
 - 2000년 2월부터 진행된 KEDO의 경수로 건설 관련 보험의 경우 북한의 국영보험회사(조선국제보험회사)가 보험을 직접 인수하려는 의향을 보였으나 담보능력, 해외재보험, 손해사정 절차 등의 이유로 남한보험회사가 주도하여 인수한 바 있음

40) 남북한 교역(거래)은 '나라와 나라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1988년 7·7 선언)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국경 간 거래방식은 아님

- 다음으로 부분 시장 개방 시⁴¹⁾ 자유경제구역 내에서 북한보험회사와의
합영 또는 합작회사⁴²⁾를 설립하여 북한보험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통일 1년 전에 서독 내 보험회사인 알리안츠가 동독 국영
보험회사의 일부 지분을 흡수하여 「독일보험주식회사」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동독보험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음⁴³⁾
- 마지막으로 완전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법인
설립 등 단독투자를 통해 북한보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래 금융산업에 대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고,⁴⁴⁾ 2007년
WTO 가입으로 외국보험회사의 진출이 가속화됨
 - 보험시장 개방 초기 생명보험시장에 진출한 Prudential(1999년),
Manulife(1999년) 등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며, 각각 2016년 기준 생
명보험시장 점유율 1위(26.8%), 3위(12.1%)를 기록 중임⁴⁵⁾
 -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현재 1개 회사만이 베트남 자국기업이며, 나머지는
모두 외국사임

41) 중국의 경우 1992년 시장을 개방한 후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진입하였는데, 2001년부터 2004년에 걸쳐 지역 제한을 점차적으로 철폐함

42) 외국투자기업은 3가지로 구분되며 합작기업은 공동투자 및 단독(북한)운영, 합영기업은 공동투자 및 공동운영, 외국인기업은 단독투자 및 단독(외국인)운영함(『외국인투자법』 제2조)

43) 신동호·안철경·조혜원(1997),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보험연구소, pp. 85~94

44) 과거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1996년부터 정부소유의 Bao Viet Life 社만이 영업을 해옴

45) AXCO(2018)

■ 그림 III-1 시장 개방 수준에 따른 북한 보험시장 진출 전략



2. 과제

❑ 북한의 제도·환경 수준을 감안할 때, WTO 등 국제기구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⁴⁶⁾될 것이므로 급격한 보험 및 금융시장 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할 경우 글로벌 규범에 맞도록 회계·감독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체계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미얀마, 베트남, 중국 등 체제전환국에 대한 다양한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경험을 활용하여 북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⁴⁷⁾

46) 베트남은 WTO 가맹 신청 후 가입까지 12년, 중국은 15년이 소요됨

47) 이해정(2018. 7. 4),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 남북한 CEPA 추진」, 국회의원 민병두 정책세미나 토론자료, pp. 51~53

❑ 북한이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한다 해도 부족한 보험금융 인프라(인력, 자본력,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 등)를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정부 및 보험업계의 지원이 요구됨

- 금융보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보험인수시스템 구축 지원, 보험금 지급심사체계 마련, 보험료 산정을 위한 통계 구축, 보험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류, 보험제도 자문 등을 추진해야 함

❑ 보험업계는 중장기적으로 북한 보험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해외 보험회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북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리스크 분담(Risk Sharing)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재)보험회사들과 ‘경협 리스크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분야별로 다양한 보험수요가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실물 부문에서는 건설공사, 기계파손, 화재, 해상적하, 운송, 근로자재해, 배상책임, 자동차 분야의 보험수요가 예상됨
 - 관광 및 문화교류와 관련해서는 신변안전, 주민왕래, 여행자 상해위험 분야에 대한 보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금융당국은 북한보험시장의 선진화를 지원하고, 남북 간 현존하는 제도하에서 보험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남북 간의 보험거래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⁴⁸⁾

48) 남북경협 비즈니스 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남북관계 단절(70.6%)’, ‘법·회계·금융시스템 미비(20.9%)’였으며, 남북경협에 앞서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으로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39.9%), 안전보장(33.1%), 법·회계·금융시스템 선진화(16.0%)를 꼽음(매일경제 2018. 6. 7)

- 남북 간 보험법과 감독체계 및 규정 등 보험 관련 자료를 상호교환하여 남북 간의 보험체계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경협기업 지원 및 보험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남북 간 보험거래 합의서 제정이 요구됨
 - 보험인수 원칙, 보험금·보험료 등 자금의 송금 문제, 손해사정업무를 위한 공동사무소 설치, 남북 간 보험법규, 규정 및 정보의 교환, 직무·연수 교육의 실시, 보험분쟁처리 등



부록 I. 북한의 사회·경제 현황

1. 인구구조

☐ 2016년 기준, 북한인구는 2,490만 명으로, 남한인구(5,125만 명)의 절반 수준임⁴⁹⁾

-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비중은 20.2%로 빠르게 감소 중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69.6%임
 -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북한이 1.95명으로 남한(1.23명) 대비 0.72명이 더 많음⁵⁰⁾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나타남
 - 2003년 65세 인구 비중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33년에는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⁵¹⁾
- 기대여명은 남성 66.2세, 여성 72.9세로 남한(남성 79.3세, 여성 85.4세)에 비해 10년 이상 차이가 존재함

49) 북한 통계는 통계청이 북한의 1993년, 2008년 인구일제조사 자료를 기초로 2010년 11월에 작성한 북한인구추계 자료를 참고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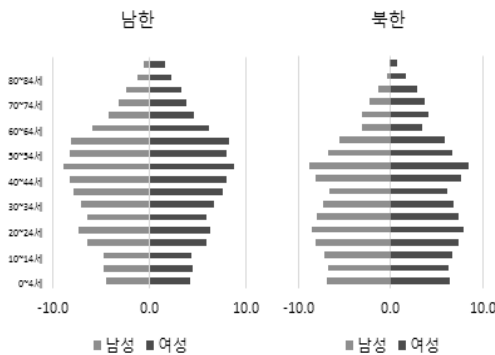
50)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51)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라 함. 남한은 2017년 8월 기준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함

부록 그림 I-1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 비교(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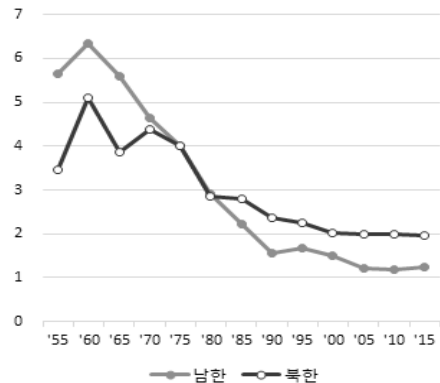
〈인구 피라미드〉

(단위: %)



〈 합계출산율¹⁾ 〉

(단위: %)



구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총인구 수	기대여명(남/여)	합계출산율 ¹⁾
남한	13.6%	72.8%	13.6%	51,246천 명	79.3/85.4세	1.23%
북한	20.2%	69.6%	10.2%	24,897천 명	66.2/72.9세	1.95%

주: 1) 2015년 기준

자료: 통계청;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2. 경제 현황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소유제⁵²⁾에 기초한 중앙집권형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제난을 겪으며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현상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사회주의 소유제하에서는 사유범위를 근로소득과 일용소비품으로 한정하였으나,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후 개인 소유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52)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주요 공장·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 아니라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형태로, 토지·농기계·배·중소공장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함(사회주의 헌법 제20조~제22조)

- 소토지 경작물, 상설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지식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소유 대상으로 확대됨

1) 경제구조

▣ (경제성장)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시장활용 정책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경제가 다소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정체된 상황임

- 2000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로 저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에 따라 총 생산력 수준이 절반 이하로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고난의 행군시기)
 - 1999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에서는 벗어났으나 회복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2016년 기준 36조 3,730억 원으로 남한(1,646조 209억 원) 대비 1/45 수준임⁵³⁾
 -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 원으로 남한(3,198만 원) 대비 1/22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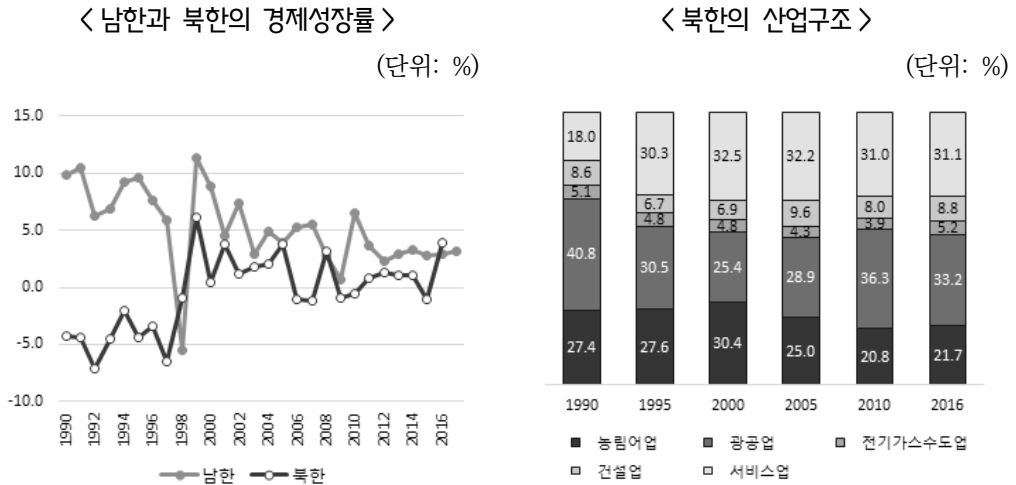
▣ (산업구조)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한 제조업 기반 붕괴로 2차 산업 위주의 중진국형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 중심의 저소득 개도국형 산업구조로 후퇴함⁵⁴⁾

- 1990년과 2016년 비교 시 중화학공업 비중 축소(25.6%→13.7%)로 인해 광공업 비중이 40.8%에서 33.2%로 큰 폭으로 감소함

53) 통계청

5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부록 그림 1-2 북한의 경제성장률 및 산업구조



자료: 한국은행

2) 교역 현황

☐ (남북교역)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경협은 정치적 사건에 따라 변동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정점을 기록한 후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교역실적이 미미함

-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조치,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따른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 201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역량이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 간 교류협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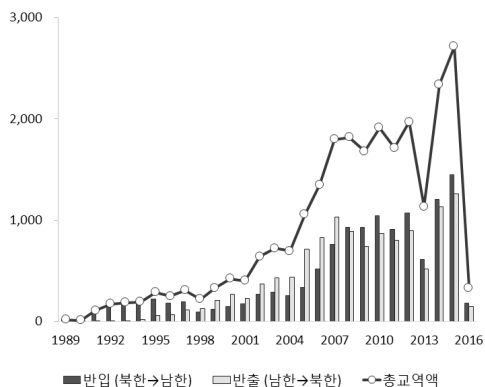
■ (대외무역)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대외무역의 양적 성장은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와 함께 확대되었으며 수출품목은 1차 자원 및 위탁 가공 제품에 편중됨⁵⁵⁾
-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증대되는 형태로 전개됨
 - 북중무역은 1999년 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그 비중이 늘어 2016년 기준 92.7%를 차지함⁵⁶⁾

■ 부록 그림 I-3 북한의 교역 현황

〈남한과 북한의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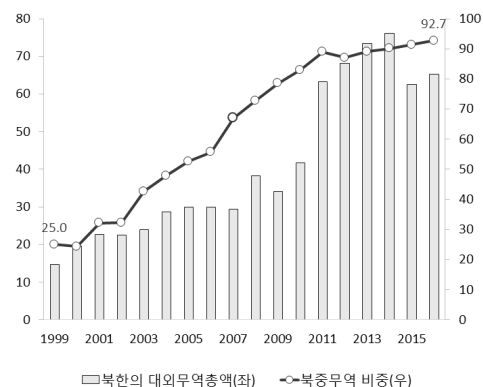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통일부(2017. 7), 남북교류협력동향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통일부(2017), 『2017 북한이해』

55) 통일부(2017), 『2017 북한 이해』

56) 북한의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 급증, 경제회복을 위한 설비자재의 수입 증가, 시장의 발달로 인한 소비재 수입의 급증, 남북경협 위축·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통일부(2017), 『2017 북한 이해』)

3. 사회보장제도

- ❑ 북한은 주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노령·질병·노동능력 상실자, 무의탁 노인 및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제72조)에 명시하고 있음
- ❑ (소득보장) 북한의 연금제도는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함⁵⁷⁾
 - 연금의 종류로는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으며, 대상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제도는 연로연금제도임
 - 공로자연금은 국가에 대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자에게 월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연로자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에게 월임금의 60~70%를 지급하는 제도임
 - 노동능력상실연금과 유가족연금은 일종의 산재보험에 해당함
- ❑ (의료보장)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전 인민에 대한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병행, 예방의학의 강조 등의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음
 -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예산으로 조달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57) 통일부(2017), 『2017 북한 이해』

부록 표 I-1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 소득보장제도 〉		〈 의료보장제도 〉	
대상	적용제도	구분	주요 내용
근로자 (노동자 및 사무원, 일시 노동능력 상실자 포함)	국가사회보험제 (사회보험법, 1946)	대상	전체인민
비근로자 (연로자, 노동능력상실자, 무의무탁자)	국가사회보장제 (사회보장법, 2008)	급여	진찰료, 약재 또는 치료재료 비용, 처치, 수술비, 입원료 등
사회적 유공자	특별 보호 및 우대 조치 (사회주의헌법, 사회보장법)	재정	국가 부담
		전달 체계	1차: 리·동 진료소 2차: 시군구 인민병원 3차: 도직할시 중앙병원, 대학병원 4차: 평양특급병원

자료: 이철수 외(2016),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과도기 이중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금융시장

북한에서 금융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유통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함⁵⁸⁾

- 모든 금융행위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또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금융행위는 제도적으로 금지함⁵⁹⁾
- 북한의 경우 ‘재정의 보조’, ‘원(자금)에 의한 통제’ 등과 같이 계획경제 수행에 필요한 금융의 기능을 중요시 함
 - 금융을 국가가 경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용하는 재정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며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 활동을 재정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58) 김영희(2008), 『북한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산은경제연구소; 한편,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재정으로, 경제주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유통을 금융으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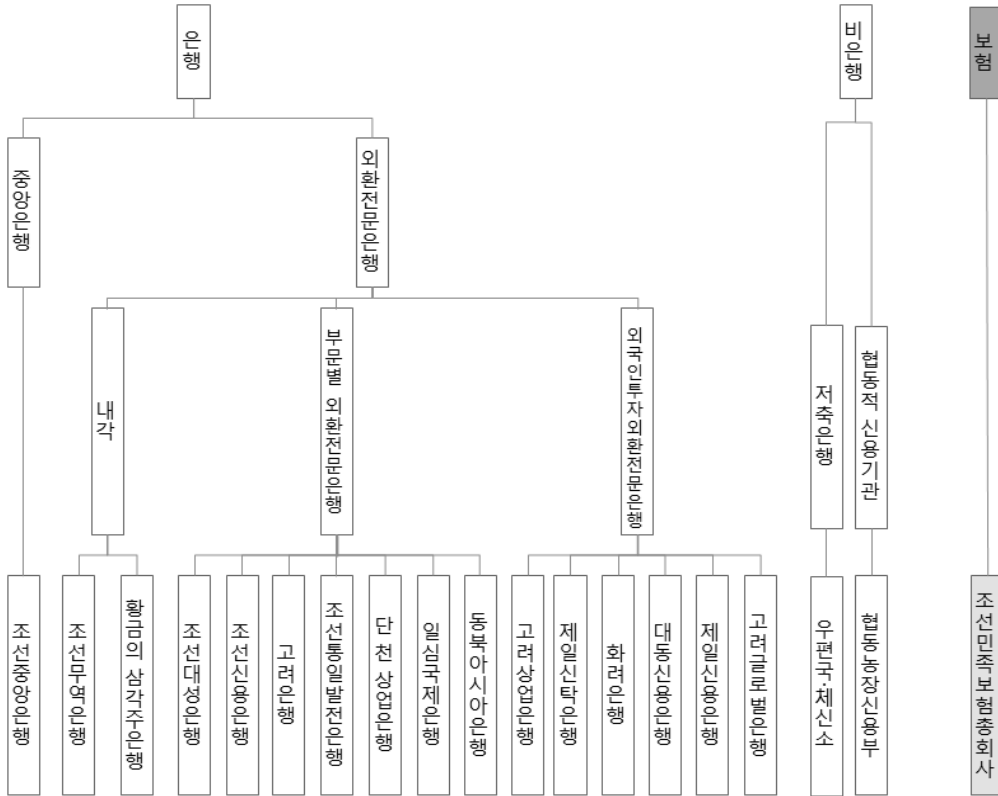
59) 제2자연과학출판사(2006), 『기업관리용어-1000』, 평양, p. 111

❑ 북한은 계획경제에 대해 금전적인 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통제를 위해 단일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음⁶⁰⁾

- 조선중앙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모두 담당하며, 이들의 업무보완을 위해 대외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은행, 기타 특수 기능을 담당하는 합영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성됨
 - 대외금융을 담당하는 전문은행으로는 조선무역은행(국가무역회사들의 대외결제 담당), 조선대성은행(권력기관의 무역결제업무 전담), 단천상업은행(외환결제은행) 등이 있음
 - 합영금융기관은 합영법 제정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고려상업은행, 화려은행, 제일신탁은행 등이 이에 속함
 - 한편, 비은행저축기관으로 우편국·체신소, 협동농장신용부가 있으며, 보험 기관에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있음

60) 다만, 2004년 '중앙은행법' 제정 이후 2006년 일반은행법에 해당하는 '상업은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제도로부터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한 바 있음(임을출(2016),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부록 그림 I-4 북한의 금융시스템 구조



주: 2005년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 생명보험사업을 인계받은 사실을 반영하였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 『북한의 금융』을 수정·보완함

저자약력

■ 안철경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선임연구위원
(E-mail : ckahn@kiri.or.kr)

■ 정인영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연구원
(E-mail : essence4u@kiri.or.kr)

CEO Report 2018-0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발행일	2018년 7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3775-9017)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